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지 면) 11. 8.(수) 조간
(인터넷) 11. 7.(화) 12:00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 벤처투자법령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 내용, 수준 등을 구체화한 제재양정기준 마련
- 「벤처투자법」 시행('20.8.12.) 이후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재심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일 벤처투자법령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내용, 수준 등을 구체화한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로 경중, 고의·과실 및 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벤처투자법령 위반을 사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을 받아 재심의를 실시한다.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제재양정기준을 참고하여 기존에 부과된 경고, 시정명령 등 법령이 정하는 행정처분이 감경·면제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제재양정기준은 행정처분 결정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심의를 희망하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11월 24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실 투자관리감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지 (044-204-7720)
		담당자	사무관	전은별 (044-204-7723)
			주무관	류경린 (044-204-77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 목적

○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위해 **벤처투자법령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제재양정기준에 근거한 재심의 실시**

□ 재심의 계획

○ **(신청 주체)** **'20.8.12.**(벤처투자법 시행)**부터 재심의 공고 전일**까지 **벤처투자법령*** 위반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을 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舊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또는 舊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

○ **(대상 처분)**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확정**** **처분**

*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주의' 또는 '주의촉구'는 제외

** 처분 확정 전 '사전처분통지'는 제외

○ **(신청·접수)** **'23.11.13(월) ~ 23.11.24(금), 18시까지**

* 온라인은 11.24(금) 18시까지 접수된 건, 우편물은 11.24(금)까지 우체국 소인 날인분에 한하여 인정함

○ **(심사 기준)** **제재양정기준**에 따른 감경·면제 사유를 기반으로 **법 위반동기, 파급효과, 위반행위 시정 노력** 등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 고려

○ **(심사 절차)**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신청 및 접수 (11.13~11.24)	→	서류 검토 (11월중)	→	재심의 (12월중)	→	재심의 결정 및 통지(12월중)
운용사 (온라인 또는 우편)		중기부		제재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